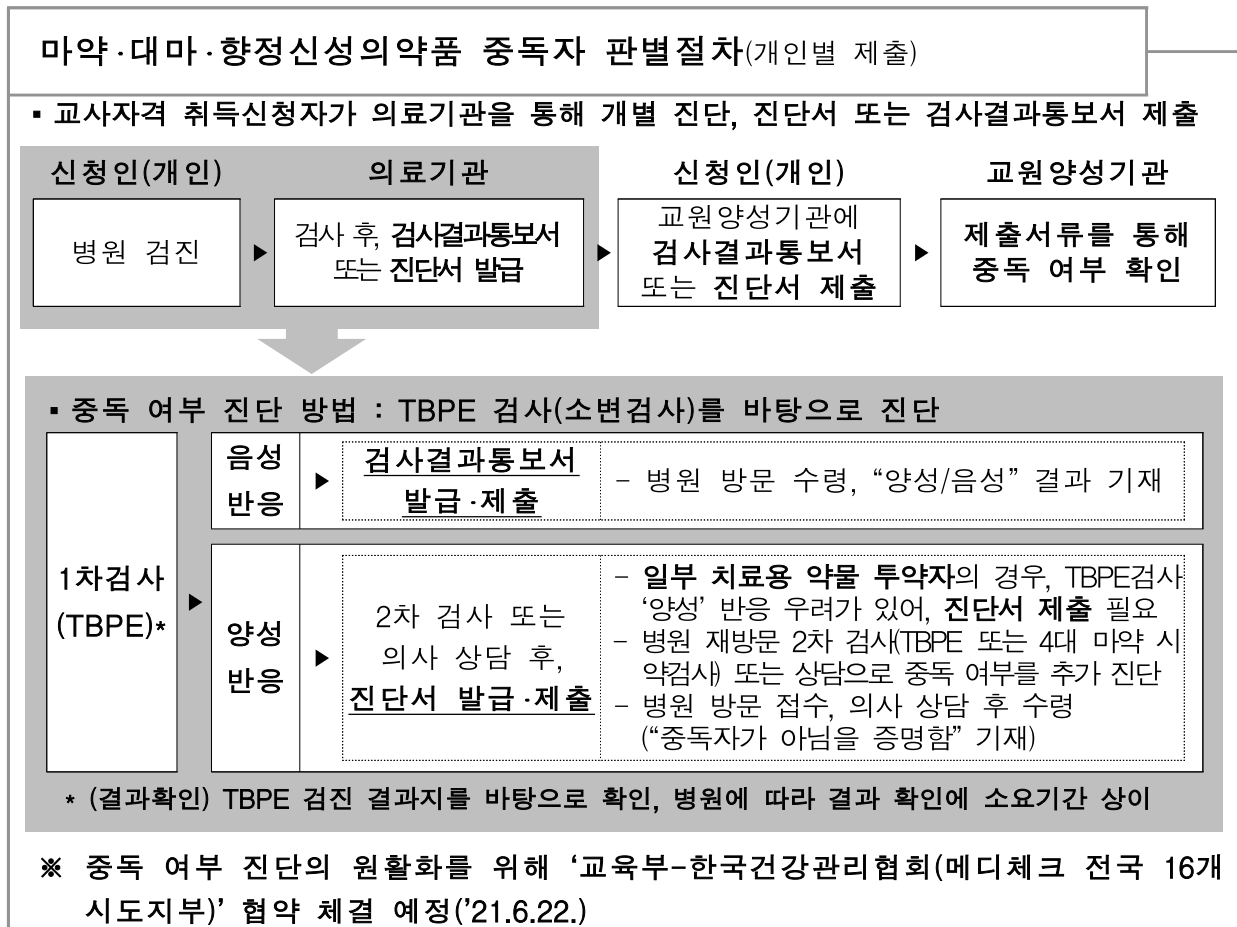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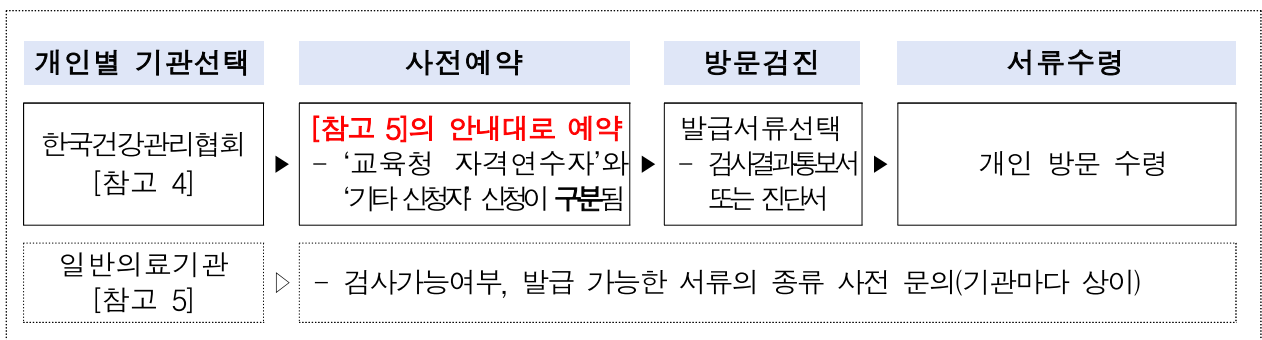
1 제출서류 및 검진 관련 안내

-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참고 1, 2]
 -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사전 안내 필요
 -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 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 ※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 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 기타 기관 문의 필요)
 - ※ (예시) 짝수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22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1년 1월~'22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 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 (검진방법) 소변검사로 실시(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 ※ (TBPE검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4대 마약 시약검사) 각 마약류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검사 신뢰도 상승)

- (검진비용) 의료기관별 상이하나, TBPE검사의 경우 '검사결과통보서'는 약 5,000원~25,000원, '진단서' 포함 시 약 15,000~35,000원 예상
※ 2차 검사로 실시 가능한 '4대 마약 시약검사'는 TBPE 검사 비용보다 많은 비용 소요
- (검진기관)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 가능(사전예약 필요)
 - (법무부 지정기관)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
 - * www.hikorea.go.kr 탑재된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기관 참조
 - ※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 (한국건강관리협회) '21.6.23. 이후 전국 16개 지부에서 검사 가능 ('21.6.22. 교육부와 협약 체결 예정)
 - ※ 검사결과통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에서 발급 가능 [참고 3, 4]

2 [참고] 한국건강관리협회(교육부 협약기관) 검진안내 [참고 3]

- (검진신청) 교사자격 취득을 신청하려는 사람에 한해 '21.6.23. 이후 마약류 검사 가능



※ (검사결과통보서) 민감정보가 포함된 내용으로, 개인별 의료기관 방문 수령 필요

- (검진내용 및 비용) 소변검사를 통한 TBPE검사 후, 서류* 발급
* (TBPE검사+검사결과통보서) 국가건강검진 병행시 5,000원 / 비병행시 6,000원
→ (+진단서) 10,000원 추가

□ 자료 보관

- 교원자격증 발급심사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관 필요
※ 원본 문서 보관

참고 1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안]

건강 진단서

원부대조필 인

병록번호 _____

연번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 _____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				전화			
병명							
소견	위 사람은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위의 판단은 진단일 현재의 의학적 검사와 아래 표시한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임						
비고							
용도	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			진단일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 TBPE ☐ 진단시약검사 ☐ 기 타()						

발행일 :

의료기관 :

주소 및 명칭 :

전화 및 FAX :

면허번호 : 제 _____ 호 의사성명 _____ (인)

※ 상기 진단서는 예시로,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

참고 2**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안)**

접수번호

교사자격취득용 검사결과통보서

구 분	시험시행기관	접수번호	성 명	
검사시행			(한글)	
주민번호				
주 소		전화 번호	집)	
			휴대폰)	

검 사 내 역			
TBPE검사		기준범위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2021년 00월 00일

담당의사:

(인)

의사소견	
종합판정	
판정보류 소견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검사 기관 (인)	
사용제한	교원양성기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도 외 專用(전용)금지

※ 결과통보서는 기관마다 발급가능여부가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교육부 협약 체결에 따라 전국 '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에서 발급 가능, [절차는 \[참고 3\] 참조](#))

참고 3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결격사유 검진 방법

- 검사결과 통보 방법이 상이하니, 수검자의 소속 또는 자격취득 상황에 따라 반드시 아래 예약명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 기타 교사자격취득자의 예약명(대학원 등을 통한 자격취득 현직교원 포함)

수검자 소속	예약명	비고
교육대, 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전문대, 산업대, 방통대, 기타양성대학 (대학생, 현직교사 포함)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 (대학명이 아님. '대학'으로 예약)	검사결과 통보서 방문수령

※ (유의사항) 교육청 연수대상자가 아니므로,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이라는 예약명으로 예약신청을 해야 함 (교사자격취득용 검사-이화여대 ×)

[한국건강관리협회 예약 사례]

- ② 충북의 00사범대학생 또는 서울의 교육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자격을 취득하려는 교사
- “교사자격취득용 검사 예약신청합니다. 지역이 아닙니다. '대학'으로 예약 부탁드립니다.”

참고 4**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전국 지부 현황**

연번	지부명	주 소	연락처
1	서울 서부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35 (화곡6동 1097)	02-2600-2000
2	서울 동부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78 (용두동 112-1)	02-3290-9800
3	서울 강남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신천동 7-18) 롯데캐슬프라자 5층	02-2140-6000
4	부산	부산시 동래구 총렬대로 145 (온천2동 1438-2)	051-553-6400 ~ 4
5	대구	대구시 동구 장등로 16 (신천동)	053-757-0500
6	인천	인천시 미추홀구 독배로 500 (송의동 163-22)	032-890-8700
7	울산	울산시 중구 변영로 360 (학산동 75-5)	052-241-2000
8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조원동 779)	031-250-5800
9	강원	춘천시 남춘로 50 (효자2동 363-7)	033-260-0800
10	충북·세종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31(봉명동 725)	043-297-1100
11	대전·충남	대전시 서구 계룡로 611 (탄방동 90-8)	042-532-9890
1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40 (덕진동1가 1408-3)	063-259-8900
13	광주·전남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32 (농성동 638-11)	062-363-4040
14	경북·대구	대구시 북구 팔달로 23(노원동3가 523-3)	053-350-9000
15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107 (양덕2동 524-2)	055-259-0100
16	제주	제주시 연북로 111 (연동 1375)	064-740-0200

※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홈페이지 : <http://www.kahp.or.kr>